

2023년도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8.(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77)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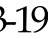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93건(안전번호 제2023-19927호~2101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9927호~19954호는 만화의 리뷰, 설명 등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19955호~19957호는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제품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으로, 제품과 별도의 합법 시장의 존재 또는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정권고 보다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19958호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캐릭터를 허락없이 이용한 사안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판매 제품 전체를 불법복제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행정조치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권리자측의 문제제기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저작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계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9959호~19963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과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964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965호~20008호는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0009호~20031호는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 의견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6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7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9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927호~1995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만화의 리뷰, 설명 등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예전에 영상물은 20분 정도면 불법복제물로 보고 시정권고를 의결하였는데 만화는 몇 장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영상물의 경우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 즉 줄거리 중심으로 저작물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요약한 경우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시정권고를 의결해 주신 사례가 있음. 본건의 경우 31개 게시물을 모두 개별적으로 검토했는데,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정도의 게시물은 없었음.
- E 위원: 본건의 경우에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임. 그런데 예를 들어 만화 전체가 10권이고 그 중 10분의 1인 한 권 전체를 게시했다면 어떠한지? 각 권당 30% 정도를 게시하였다면 어떨지?
- 오진해 전문위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한 권 또는 한 화 단위라도 전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검토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단순 불법복제물로 시정권고 대상임.
- E 위원: 각 권마다 30%씩 있으면 가결인가?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9927호~19954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공정이용의 소지가 있음. 부결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저도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927호~19954호는 만화의 리뷰, 설명 등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9955호~1995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제품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파는 상품은 정품이 맞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사무처가 판매 상품의 실질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게시물 내용에 의하면 국내외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정품임. 이러한 방식의 명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9955호~19957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955호~19957호는 제품과 별도의 합법 시장의 존재 또는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정권고보다는 권리자가 직접 대

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95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OOOO~~ ~~OOOOOOOO~~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캐릭터를 허락없이 이용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원본은 책으로 판매중인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별도의 원본은 없으며, 판매중인 pdf파일은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것임.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임이 확인되면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바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본건은 타인의 캐릭터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게시자가 직접 제작했고 그림 또한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있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995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D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9958호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판매 제품 전체를 불법복제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행정조치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권리자측의 문제제기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저작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계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959호~19963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9959호~1996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9959호~19963호는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996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996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96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9965호~2000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만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ㅇㅇㅇ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밀캠'은 어떻게 찍는 것인가?
- D 위원: 뮤지컬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 찍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음.

- E 위원: 영화의 경우 이른바 '캠버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음. 최근에는 일반인보다는 내부에서 유출된 불법복제물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공연물의 '밀캠'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 D 위원: 일반인의 '밀캠'도 있고, 관계자의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송출되는 실황, DVD 등을 불법으로 녹화·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19965호~2000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9965호~200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0009호~20031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0009호~2003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0009호~200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0032호~2101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AR 타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0032호(“TAR 타르”)는 2023.02.22.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00포인트에 판매중임.
(“존 워 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0169호(“존 워 4”)은 2023.04.12.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90포인트에 판매중임.
(“이니세린의 밴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0238호(“이니세린의 밴시”)은 2023.03.15.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50포인트

에 판매중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20032호~2101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0032호~2101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9927호~19954호, 제2023-19955호~19957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958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959호~19963호, 제2023-19964호, 제2023-19965호~20008호, 제2023-20009호~20031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0032호~2101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25.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한승원